

서울특별시 교육·학예에 관한 규칙 제정과 개정·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

검 토 보 고

I. 회부경위

1. 의안번호 : 제986호
2. 발 의 자 : 정지웅 의원
3. 발의일자 : 2023. 8. 10.
4. 회부일자 : 2023. 8. 21.

II. 제안이유

- 2022. 1. 「지방자치법」 전부개정 및 시행에 따라 주민이 주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규칙에 대하여 제정, 개정 또는 폐지 의견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할 수 있는 조항이 신설됨.
- 제출된 주민 의견의 검토와 결과 통보의 방법 및 절차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바, 서울특별시 교육규칙에 대한 주민 의견 검토와 결과 통보의 방법 및 절차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.

Ⅲ. 주요내용

1. 조례의 근거 법령과 목적을 명시함(안 제1조~안 제2조)
2. 주민이 규칙의 제정,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(이하 “제출의견”)을 제출하는 방법을 명시함.(안 제6조)
3. 주민의 제출의견에 대한 검토와 결과통보의 방법 및 절차를 규정함.(안 제7조 ~ 안 제8조)
4. 주민의 제출의견에 대한 반영을 명시함.(안 제9조)

Ⅳ. 참고사항

1.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법」 제20조, 제29조, 「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」 제25조, 「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」 제23조, 같은 법 시행령 제8조

V. 검토 의견(수석전문위원 김창범)

1. 제안경위

- 동 조례안은 2023년 8월 10일 정지웅 의원에 의해 의안번호 제 986호로 발의되어 2023년 8월 21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.
- 동 조례안은 「지방자치법」 전부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규칙 제정, 개정, 폐지 의견 제출과 관련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되었습니다.

2. 주요 검토의견

가. 제정 취지에 대한 의견

- 지난 2021년 전부개정된 「지방자치법」(이하 ‘법’)에서는¹⁾ 지방자치단체의 규칙 중 주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련된 사항에 대해 주민들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정·개정·폐지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, 그에 따른 세부방식 등은 조례에 위임하도록 규정되었습니다(법 제20조)²⁾.
- 동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지방자치단체장의 규칙 제정시 주민이 규칙의 제정·개정·폐지와 관련한 의견을 제출·검토·통보하는데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, 주

1) 지방자치법 [시행 2022. 1. 13.] [법률 제17893호, 2021. 1. 12., 전부개정]

2) 제20조(규칙의 제정과 개정·폐지 의견 제출) ① 주민은 제29조에 따른 규칙(권리·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으로 한정한다)의 제정,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.

②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거나 법령이나 조례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는 사항은 제1항에 따른 의견 제출 대상에서 제외한다.

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의견이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검토 결과를 그 의견을 제출한 주민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④ 제1항에 따른 의견 제출, 제3항에 따른 의견의 검토와 결과 통보의 방법 및 절차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민의 권리와 책임에 대한 사항에 대해 주민주권의 원리를 효율적으로 보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.

나. 주요 조문별 검토

1) 조례안의 구성

○ 동 조례안은 총 12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, 안 제1조는 조례안의 목적, 안 제2조부터 안 제4조까지는 정의와 책무,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.

○ 그리고 안 제5조는 의견제출의 제외 사항을, 안 제7조는 의견제출의 방법을, 안 제7조는 제출된 의견의 보완과 관련한 사항을, 안 제8조는 제출된 의견의 검토 및 결과 통보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.

또한 안 제9조는 제출된 의견의 반영에 대한 사항을, 안 제10조와 안 제11조는 차별대우 금지와 비밀 준수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.

○ 이와 같은 동 조례안의 구성체계는 관련 지침³⁾ 등을 대부분 준수하고 있으며, 규정의 실제적 내용에 따라 적절하게 조문의 순서를 정하고 있는바, 동 조례안의 구성 체계상 별도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.

2) 의견 제출에 관한 의견(안 제5조~안 제9조)

○ 안 제5조는 법 제20조제1항 및 제2항⁴⁾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견

3) '2022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', 법제처, 2022.8., '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(10판)', 법제처, 2021.12

4) 제20조(규칙의 제정과 개정·폐지 의견 제출) ① 주민은 제29조에 따른 규칙(권리·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으로 한정한다)의 제정,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할

제출 대상을 규정하고 있고, 안 제6조는 주민이 규칙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경우 의견제출서에 취지와 이유를 명확히 밝히고 다수의 의견제출의 경우 결과 통지 받을 3명 이내의 대표자를 선정⁵⁾하여 의견제출서에 표시하는 등 의견제출 방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.

- 또한 안 제7조는 의견제출서의 보완이 필요할 경우 보완사항과 보완 기간을 표시해 보완을 요구하며⁶⁾, 의견제출 사항이 교육감 소관이 아닌 경우 이를 지체없이 이송하고 의견제출인에게 알리도록 규정⁷⁾하고 있습니다.
- 그리고 안 제8조는 의견제출서가 제출된 날로부터 30일 이내(법 제20조제3항⁸⁾)에 법제심의위원회를 거쳐 의견제출인에게 검토 및 결과를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.

수 있다.

②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거나 법령이나 조례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는 사항은 제1항에 따른 의견 제출 대상에서 제외한다.

5) 「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8조(다수 민원인 중 대표자의 선정) ① 행정기관의 장은 3명 이상의 민원인이 대표자를 정하지 아니하고 같은 민원문서를 연명(連名)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민원인 중에서 3명 이내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통보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민원의 성격, 처리절차 및 방법 등을 고려하여 3명 이내의 범위에서 적절한 대표자 수를 민원인에게 제시할 수 있다.

6) 「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」제22조(민원문서의 보완·취하 등) ① 행정기관의 장은 접수한 민원문서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지체 없이 민원인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.

7) 「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」제16조(민원문서의 이송) ① 행정기관의 장은 접수한 민원이 다른 행정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접수된 민원문서를 지체 없이 소관 기관에 이송하여야 한다.

8) 제20조(규칙의 제정과 개정·폐지 의견 제출) ①~② (생략)

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의견이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검토 결과를 그 의견을 제출한 주민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- 또한 안 제9조는 의견제출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주민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규칙의 제·개정 또는 폐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.

○ 이처럼 안 제5조부터 안 제9조까지의 규정은 법과 「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」 및 같은 법 시행령을 근거로 주민의 제·개정 및 폐지 의견 제출 등에 대한 절차를 교육부 조례제정 예시안⁹⁾의 범위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.

- 또한 동 조례안은 전국 17개 시·도 교육청 중 5개 교육청을 제외한 12개 교육청 및 서울시¹⁰⁾에서 제정·시행하고 있는 조례와 유사한 범위에서 주민의 의견제출 방법·보완·검토·통보·반영 등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,

동 조례안은 규칙의 제·개정과 폐지에 대한 주민의견 제출의 절차를 명확히 하여 제도의 운영적 측면에서 시민편익을 증진시킬 뿐만 아니라, 조례의 법적 안정성과 타시·도와의 형평성 측면에서 별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.

○ 참고로 서울시교육청은 동 조례안과 관련하여 “의견없음”을 제출 하였습니다.(행정관리담당관-12681.,2023.8.22.)

□ 이상으로 「서울특별시 교육·학예에 관한 규칙 제정과 개정·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」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.

9) '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른 교육자치법규 현행화 등 조치 안내', 교육부 기획팀-966.(2022.4.13.)

10) 「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

- 제6장 규칙의 제정과 개정·폐지 의견제출 (신설 2022.3.10.)